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난방·배기시설 설치하여 옷방·붙박이가구 결로 방지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결로 발생에 따른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10월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침실에 설치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에 대해서도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하도록 하고, 공동주택 각 세대에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설치 공간에도 난방설비를 하도록 했으며, 침실에 설치되는 밀폐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는 외벽 및 옥실과 이격된 경우를 제외하고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토록 했다[편집자주].

■ 개정 주요항목

① 침실 내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난방·배기설비 설치

- 결로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 각 세대에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 공간에도 바닥 난방 의무화
- 침실 내 설치되는 밀폐된 옷방·붙박이 가구에는 외벽 또는 옥실과 이격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기 순환을 위한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도록 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배기설비로,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cm 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

② “결로방지 상세도”에 침실 내 옷방·붙박이 가구를 포함

- 침실 내 옷방·붙박이 가구가 벽체접합부(침실의 외부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에 설치되는 경우, “결로방지상세도”에 이를 포함하여 결로 발생을 사전에 방지토록 함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세대 내의 거실·침실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하여 “결로방지 상세도”를 작성하여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주요항목 신 · 구 대비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8.11., 타법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555호, 2016.10.25., 일부개정]
<p>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 ① (생략)</p> <p>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 · 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 · 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 _____ 접합부위(침실에 옷방 또는 불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불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를 포함한다) _____ _____ _____.</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7조(난방설비 등) ① ~ ③ (생략)</p> <p>④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06.1.6]</p> <p>〈신설〉</p>	<p>제37조(난방설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공동주택 각 세대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온돌 방식의 난방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침실에 포함되는 옷방 또는 불박이 가구 설치 공간에도 난방설비를 하여야 한다.</p> <p>⑤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06.1.6]</p>
<p>제44조(배기설비 등) ① (생략)</p> <p>② 법 제4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신설〉</p>	<p>제44조(배기설비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공동주택 각 세대의 침실에 밀폐된 옷방 또는 불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옷방 또는 불박이 가구에 제1항에 따른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및 욕실에서 이격하여 설치하는 옷방 또는 불박이 가구에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법 제4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 자세한 개정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 공지사항 참조